

2026년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5차)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2026년도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5차)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5.

궁능유적본부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예정분야	직 종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휴대전화 뒷자리)
시설물청소원	공무직	응시자 없음
안전관리원 주간	공무직	11.(7497), 적격자 없음
시설물관리원 다급	공무직	적격자 없음
조리원	공무직	01.(6842)
안전관리원 주간	기간제	13.(3842)
전산원	기간제	04.(4040)

※ 예비합격자 :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의 경우 채용
 - 조리원: 02.(4251), 안전관리원 주간(기간제): 01.(0761), 전산원(기간제): 01.(2227)

2. 채용 예정일

채용예정분야	직 종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휴대전화 뒷자리)
안전관리원 주간	공무직	2026. 9. 1.
조리원	공무직	2026. 8. 18.
안전관리원 주간	기간제	2026. 8. 18.
전산원	기간제	2026. 10. 1.

3.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안내

최종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북공관리소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8. 11.(화)까지

나. 장 소 : 경북공관리소 사무실(2층)

다.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 제출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1 서식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 병적증명서 1부 (※ 공무직 근로자 중 군 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사진(반명합판) 1매 및 통장사본 1부(※ 급여지급용 계좌)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붙임2 서식 작성)

4. 공지사항

가. 위 제출일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은 자동적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 통보 및 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채용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격사유 확인 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공관리소 인사담당(02-3700-3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능유적본부 공무원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기준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공능유적본부장 귀하